

한국건강관리협회우수논문상 시상 규정

제정 2007년 10월 26일

개정 2012년 10월 1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잡지(이하 잡지)에 우수한 연구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년간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논문의 저자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심사대상 논문 및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① 심사대상 논문은 시상 전년도 한 해 동안(동일권수) 잡지에 게재된 원저논문으로 한다.
- ② 수상 대상자는 심사대상 논문 중 최우수논문의 제1저자 또는 연락책임저자로 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의 선정과 추천)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한국건강관리협회우수논문상(이하 건협우수논문상) 수상 후보자는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아래 각 항의 활동을 한다.

-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대상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우수논문 1편을 선정하여 제1저자 또는 연락책임저자를 수상대상자로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확정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 (시상) 결정된 수상자는 해당 연도 학술대회 석상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이 건협우수논문상으로 상패와 부상을 시상한다.

제7조 (발표) 결정된 수상자는 해당 연도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8조 (부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